

##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

#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가. 제출일자 : 2004년 11월 3 일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4 일

3. 제안이유

○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서 위  
임된 사항의 시행과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  
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·체계적 추진을 위한 위원장을 행정  
부지사로 하는 10인 이내의 투자유치위원회 설치(안 제4조  
및 제5조)

### ○ 국내기업 지원대상(안 제8조)

-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 10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한 후 상시고용이 100인 이상일 경우
- 낙후지역에 100인 이상의 공장을 신·증설하는 경우

### ○ 국내기업 지원내용(안 제9조 내지 제12조)

- 입지보조금 : 매입토지가격의 50% 범위내에서 지원
- 건축비등 보조금 : 20억 이상 투자액의 3% 범위 최대 2억원 이내
- 고용·교육훈련보조금 : 신규 20명 초과 1인 50만원 6월 범위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국내·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서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지역 경

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규에 저촉  
사항은 없으나

- 산업자원부가 『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』을 금년도 상반기에 확정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였음에도 우리도 실정에 맞는 관련 규정의 제정이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와
- 국내기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일정인 이상 고용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최근 신설한 유망·우수업체 유치 및 지원대책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